

불법·불량계량기 과징금제도 도입 등 처벌 강화한다



불법·불량계량기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문화 구현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4월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유기, 전력량계 등과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에 비해 벌금이 터무니없이 작은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위법행위가 재발하는데다,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계량기의 불법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 및 동네의 계량기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량기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법률은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 표시상품으로 관리하였으나, 물티슈, 기저귀 및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그간 소비자로부터 표시된 양과 실제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하였다.

* 정량표시상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정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15.1월 예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하여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입법추진 배경

- 급속한 기술발전, 관리대상 계량기의 지속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계량기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등 계량기의 자율적 관리를 확대하고, 리콜제도·소비자감시원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장감독을 강화

주요 개정 내용

- 효율적·실효적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
 - 제조사 등이 제조결함 사실을 의무 신고토록 하고, 결함내용에 따라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22조)
 - 제작업자 및 사용자 스스로 계량기를 검정·정기검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 관리 확대(제32조~제33조)
 - 불법계량기의 감시·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감시원제도 운영(제54조)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대상 품목 조정 및 처벌기준 강화
 - 정량표시상품(現 26종)을 미용화장지, 벽지 등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생활밀착형제품 포함(제2조제3호)
 - 상거래 및 증명용 측정기에 대한 교정을 통해 측정오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40조)
 - 부정 계량행위의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2억 원 이하)하고, 위반자 명단 공개 규정 신설(제51조, 제55조)
- 계량산업 기술력 향상 및 지원사업 추진
 - 계량분야의 창업지원, 인력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계량산업의 육성(제57조~제60조)
 - 검사이력 관리, 검사대상 통보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제61조~제62조)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9)